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무총리지시 제 6 호

1978. 3. 2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록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발간

1. 정부물자 구매의 효율화를 기하고 가격조사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회계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종래 정부물자
구매시 폐정가격 결정에 적용하던 각종 률가조사기관의 가격조회
제도를 폐지하고 조달청에서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를 발행.
이를 거래 실례가격의 자료로 활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2.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를 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기관장은 물론 산하유관기관장도 이에 적극 협조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산림청.

국무총리지시 제 6 호

1978. 3. 23

국세청·전매청·철도청 등 물가규제 주무관청은 물가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격의 결정 및 변동상황과 신고가격을 이를 결정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할 것.

나. 국세청(산하 세무서) 및 관세청은 정부 각급기관으로부터 의 조사가격 및 보고가격의 조회 또는 열람에 적극 협조할 것.

다. 한국은행은 소관 물가조사·대상품목에 대한 공장도 또는 도매가격을 매월 조사하여 조달청에 통보할 것.

라. 국방부(조달본부)는 일반 물자에 대한 자체구입 실례가격을 매월 조달청에 통보할 것.

마. 조달청은 유판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가격, 자체 구매 실례 가격 등을 종합 정리하여 매분기마다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를 발간 배포하되, 가격정보지 발간에 선행하여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국무총리지시 제 6 호

1978. 3. 23

제재 회항 품목을 조회 발간에 참고토록 하고, 제재 품목, 제재 가격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11-51)